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별표 1의3 제5호”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가. 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가. 별표 1의3 제5호의 금액
 -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

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중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를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에 제외한다.

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 항목(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관련)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5.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			
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			
합계액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1.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	-----			
균한 금액	-----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	가. <u>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u>			
3조제1항제1호나목(「보험	<u>호</u> -----			
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			
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한다), 다목, 같은 항 제2호	-----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사	-----			
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	-----			
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같	-----			
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			
산정한 금액을 각각 산술	-----			

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나. (생략)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같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나. (생략)

3. (생략)

④·⑤ (생략)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나. (현행과 같음)

2. -----

가. 별표 1의3 제5호-----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호나목(「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별표 1의3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별표 1의3 제5호의 금액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생략)

④·⑤ (생략)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⑥ (생략)

<신설>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
-----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
-----.

[별표 1의3]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 항목(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관련)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

- | |
|--|
| <u>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u> |
| <u>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u> |
| <u>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u> |
| <u>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u>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신 설>

나. (생략)

다. (생략)

<신 설>

2. 개별기준 (생략)

5.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에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